

별첨 7**고용위기지역 현황 ('22.1.1. 현재)**

- * 사업 참여 신청 당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인정
- * 고용위기지역은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하며, 고시 개정으로 지역이 추가·제외되거나 각 지역의 인정기간이 연장된 경우 고시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함

지역	기간
전북 군산시, 울산 동구, 경남 거제시, 통영시, 경남 고성군, 창원 진해구	'18.4.5~'22.12.31
목포·영암	'18.5.4~'22.12.31